

은행업권 소상공인 성장금융 가이드라인

2026. 8.

금 융 위 원 회

제1장. 총 칙	1
제2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인프라	2
제3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4
제4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절차	5
제5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업무규범	7
[별표1] 소상공인 요건	9
[별표2]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업종	11

은행업권 소상공인 성장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2026. 8.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업권이 기업 및 법인의 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소상공인 성장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프라 요건, 대상 및 업무 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관련 기관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장성과 신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상공인 성장금융 시스템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 및 법인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성장평가”는 기업 및 법인의 미래 성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성장금융”은 소상공인에 대해 성장평가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상공인 성장금융평가”(이하 “SCB평가”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 기업성장등급(이하 “S등급”이라 한다)과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하 “CB등급”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등급(이하 “SCB등급”이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의견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SCB평가모형”은 제4호의 SCB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량화, 정형화된 평가기법을 말한다.
6. “SCB평가결과”는 제4호의 SCB평가에 따른 평가등급(S등급, CB등급, SCB등급) 및 평가의견 등을 말한다.
7. “소상공인 성장금융평가기관”(이하 “SCB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4호의 SCB평가를 위한 제2장의 인프라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사업자CB사”라 한다)나.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회에서 정한 자
8. “SCB평가결과 활용기관”(이하 “SCB활용기관”이라 한다)은 SCB평가기관의 SCB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 마목, 너목, 어목, 처목에 따른 은행

나.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

9.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은 SCB평가기관의 SCB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실행된 대출을 말한다.

10. “소상공인 성장금융정보”는 제6호의 SCB평가결과 및 평가근거정보, 이와 관련된 신용공여현황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은행업권의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에 관련된 업무 수행에 대해 적용한다. 단, 향후 소상공인 성장금융 외연 확장 및 제도화 여부에 따라 관련 업무 등도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인프라

제4조(개요) 이 장은 소상공인 성장금융에 필요한 평가모형, 전산화 등 소상공인 성장금융 인프라와 관련된 세부요건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SCB평가모형 체계) SCB평가기관은 S등급, CB등급, SCB등급 산출을 위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SCB평가모형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	세부사항
등급 체계	○ (S등급) -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타겟으로 하여 10등급 체계로 운용할 것
	○ (CB 및 SCB등급) - SCB평가기관이 보유한 CB등급 또는 이와 유사한 내부등급 체계로 운용하되, S등급과 CB등급이 결합된 SCB등급은 중신용·고성장등급 차주에 대해 CB등급 상향 시 CB등급의 불량률(부도율) 서열화 수준을 유지할 것
S등급 산출모형	○ (모형구분) - [별표2]와 같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4개의 개별 세그먼트로 구분할 것 - 정량적 정보를 활용한 통계적·AI 방법론 기반 계량모형과 정성평가 중심의 비계량모형으로 구성할 것
	○ (성장정의) - 소상공인의 반기간 매출성장률(YoY) 및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성장 여부를 정의하되, 세부 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을 따를 것
	○ (계량모형) - S등급 산출을 위한 계량모형은 신정원이 개발한 AI기반 계량모형(이하 ‘신정원 계량모형’) 또는 SCB평가기관이 자체 개발한 모형(이하 ‘자체계량모형’) 중 하나일 것 - 계량모형 등급에 대한 사유코드, 평점표 등 산출 근거 설명을 위한 수단을 별도로 갖출 것
	○ (비계량모형) - 계량모형으로 산출된 등급에 대한 가점부여 목적의 모형으로, 신정원이 정하는 별도의 평가 지침에 따라 운영할 것

제6조(자체계량모형) SCB평가기관은 자체계량모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계량모형 신규 개발 또는 변경 개발 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규개발과 변경개발의 구분

- (신규개발) SCB평가기관이 자체계량모형의 신규도입을 위한 개발
- (변경개발) 도입·운용 중인 자체계량모형의 변경 및 개선을 위한 개발

1. 제5조의 모형 체계 요건을 갖춘 것
2. 신규 및 변경개발의 타당성 검토, 모형 개발, 모형 검증, 개발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가 적절할 것
3. 신규 및 변경 개발 시 SCB평가기관은 모형 개발(변경) 목적, 모형 개발 결과(주요 활용 변수, 등급분포, 등급별 고성장 비중 및 불량률 등), 적용 기준일, 평가결과 활용 유의사항 등을 적용일 기준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SCB활용기관에 사전 통보할 것
4. 신규 및 변경 개발 시 SCB평가기관은 상세 평가모형 정보를 적용일 기준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신청원에 사전 통보할 것

※ 상세 평가모형 정보(신청원 통보)

- 모형 개발 보고서(자유형식)
- S등급 모형 구성
- S등급 모형 변별력 및 안정성(개발·검증시점 등급 안정성, 변별력 등)
- S등급 모형 활용변수 및 평가기준(세부 활용변수, 고객 설명용 사유코드 등)
- S등급 모형 계량/비계량 결합 관련 정보(결합 방식 및 영향도 등)
- SCB등급 결합 관련 정보(결합 방식 및 영향도 등)
- 신규(변경) 모형 적용기준일

* 단, 평가기관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 대외비 성격의 자료는 협의 후 제외 가능하며, 신청원은 상기 제출 자료를 SCB평가모형 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모형관리 및 운영) ① SCB평가기관은 지속적인 분석 및 이력관리를 통해 SCB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SCB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분석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연 1회 이상 SCB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등급분포·변별력·안정성 분석(모형 세그먼트별, 모형 유형별 등)
2. 그 밖에 SCB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분석

제8조(전산화) ① SCB평가기관은 SCB평가모형을 포함한 SCB평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은 평가근거정보 DB화, 평가등급의 산출, SCB평가의 신청·접수·평가 및 이와 관련한 이력관리, 제21조의 소상공인 성장금융정보 집중 등 SCB평가 절차 전반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단, 전산 오류 등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내부 문서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 등급산출이 완료된 SCB평가결과
2. 평가이력(평가 참여자, 평가의뢰일 및 평가완료일, 비계량평가 관련 기록 등)

제3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제9조(개요) 이 장은 소상공인 성장금융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관련 대출 과목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①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별표1]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된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이하 “KSIC”라 한다)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하 “여신취급업종”이라 한다)으로 판단한다. 단, 매출액 기준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SCB활용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여신취급업종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이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SCB활용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④ 단, 소상공인의 여신취급업종이 [별표2]에 해당하더라도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등 국민 정서상 지원에 부적절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기준 적용 및 관리) ① SCB활용기관과 SCB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에 한하여 SCB평가 및 소상공인 성장금융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SCB평가기관은 의뢰된 평가 건이 [별표1]의 상시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평가를 반려할 수 있다.

※ 상시 근로자수 요건

- 신청원이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판정

2. SCB활용기관 및 SCB평가기관은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원은 SCB활용기관 및 SCB평가기관이 집중한 소상공인 성장금융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준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4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절차

제12조(개요) 이 장은 SCB활용기관 및 SCB평가기관이 소상공인 성장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성장금융 체계 확립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규정화) ① SCB활용기관은 SCB평가기관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 취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자체교육 등을 통해 영업점에 전파하여 업무 체계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SCB평가기관은 SCB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SCB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출 신청) ① SCB활용기관은 대출 신청 기업 및 법인의 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제3장에 따른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에 해당할 경우 SCB평가의뢰 전 해당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성장금융제도 및 SCB평가와 관련된 향후 절차, 정보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의뢰) ① SCB활용기관은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여부 판단결과에 따라 SCB평가기관에 SCB평가를 의뢰한다. 단, 법인인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의 경우 SCB평가기관 중 신용정보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SCB활용기관은 평가대상 소상공인으로부터 SCB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SCB평가 의뢰 시 SCB평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제출 자료는 사업자번호, 상호명, 사업장 주소 및 우편번호, SCB활용기관이 분류한 여신취급업종, 개업일, 연락처 등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SCB활용기관과 SCB평가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④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 및 증빙자료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관리한다.

제16조(평가) ① SCB평가기관은 소상공인 제출자료 및 자체 조사자료 등을 기반으로 SCB평가모형에 따라 평가등급(S등급, CB등급, SCB등급)을 산출한다.

② SCB평가기관은 평가 품질 유지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제공) ① SCB평가기관은 평가의뢰일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의뢰 SCB활용기관에 SCB평가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소상공인에 대한 SCB평가의 경우 SCB활용기관·SCB평가기관 간 협약 등에 따라 최대 3 영업일 이내에서 평가결과 제공 시점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뢰 SCB활용기관은 SCB평가기관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 사유 및 방식 등은 내부규정, SCB활용기관·SCB평가기관 간 협약 등에 따른다.

③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해 SCB활용기관은 SCB평가기관의 귀책이 아닌 사항으로 평가취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심사 및 대출) ① SCB활용기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운용 시 SCB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SCB활용기관은 SCB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 금리 수준, 담보 수준 등 대출 조건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단, SCB평가결과만을 단독 활용하여 대출 승인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SCB평가의 적정성 점검) ① SCB활용기관은 SCB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적정성 검토 범위 및 방식 등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SCB활용기관은 SCB평가 적정성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SCB평가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SCB평가기관은 제3항의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사유를 SCB활용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자료의 보관) ① SCB평가기관은 SCB평가자료 보관에 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

※ SCB평가자료의 범위

1. SCB평가 관련 제출 자료 및 자체 조사 자료
2. 제8조제3항제2호의 평가이력

② 제1항의 SCB평가자료는 평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최소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③ SCB평가자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 등을 금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공이 가능하다.

1. 해당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평가의뢰 SCB활용기관과의 정보교환인 경우

제21조(소상공인 성장금융정보의 집중) ① SCB활용기관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 관련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전문 등의 형태로 신원원에 집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집중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항목 등은 신용정보법 제26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다.

제5장 소상공인 성장금융 업무규범

제22조(개요) 이 장은 SCB활용기관 및 SCB평가기관과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이 소상공인 성장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SCB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불공정 행위 금지) ① SCB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상공인에 특정 평가결과의 부여를 조건으로 자사 및 계열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소상공인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이용여부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 또는 조정예정을 위협하거나, 평가결과 부여를 거부하는 행위
 3. SCB활용기관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4. SCB평가의 신청 또는 발급과 관련하여 사은품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SCB평가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 ② SCB활용기관과 그 임직원은 공정한 SCB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평가결과의 보장을 요구하거나 평가결과의 임의적 조정을 요청하는 행위
 2. 평가 완료 전에 평가결과 또는 예상 평가결과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3. 의뢰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평가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평가 완료 전에 일방적으로 평가를 취소하는 행위
 4. 유리한 평가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SCB평가기관을 선택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행위
 5. 제10조에 따른 SCB평가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하여 SCB평가를 강요하는 행위
 6. SCB평가에 필요한 정상적인 평가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24조(SCB평가 윤리원칙) ① SCB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SCB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객관성, 성실성 및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SCB평가기관과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SCB평가에 관여하는 행위
 2. 평가의뢰인, SCB활용기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청탁 등에 영향을 받아 평가하는 행위
 3. 객관적인 자료 또는 합리적인 추정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SCB활용기관에 특정 평가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상 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행위

5. SCB활용기관의 요구 또는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평가결과에 맞추어 평가하는 행위
6. SCB평가 담당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거나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조사자료 또는 평가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행위
8.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평가대상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SCB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9. 그 밖에 SCB평가의 품위,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5조(면책 및 고의·중과실 추정) ① SCB활용기관 및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소상공인 성장금융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부실 발생 또는 손실 발생만으로 제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금융관련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SCB활용기관 및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부 칙 <2026.8.14.>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6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상공인 요건

①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3) 및 ②상시 근로자수 요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모두 충족

주된 업종별 소상공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0억원 이하	10명 미만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00억원 이하	10명 미만
19. 금융 및 보험업	K		5명 미만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제외)

※ 그 외 세부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소상공인 성장금융 대상 업종

세그먼트	업종	KSIC
SEG1	도매 및 소매업 * 46333(담배도매업) 제외	G
SEG2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제외	I
SEG3	운수 및 창고업	H
	광고업	M71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전문 디자인업	M732
	사진 촬영 및 처리업	M733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교육서비스업	P
	사회복지서비스업	Q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424(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제외	R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S95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제외	S96
SEG4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건설업	F
	정보통신업 *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J